



## 데이트 사이트의 회원정보 및 프로그램 영업비밀 부정 취득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②

39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平成18년(와) 제5172호
판결 일자	2008. 6. 12.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일부인용
원고 (피항소인)	1. 이플래닝 주식회사, 2. 머티어리얼 유한 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회사 외 3명(성명 미기재)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데이트 사이트 회원의 「나이」, 「원하는 이성의 타입」, 「거주 지역」, 「이용한 시간」, 「이용 요금」 등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사이트 운용 프로그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 02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녀와 성적 소수자가 헌팅과 만남을 할 수 있는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이플래닝의 전 직원들은 원고 이플래닝 및 같은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 머티어리얼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피고회사는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트 사이트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

원고들의 전 직원들은 원고 이플래닝의 영업비밀인 데이트 사이트용 휴대전화 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은 그 사정을 알고도 동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에게 원고 이플래닝에게는 937만 엔 상당을, 원고 머티어리얼에게는 372만 엔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피 고 (항소인)

각 직원에게 주어진 ID와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본건 고객 데이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ID와 암호를 입력해야 했다.

데이트 사이트를 구축하고자하는 4개의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비용은 초기 도입을 위한 수수료로는 한 사이트 당 150만 엔, 개설 후 본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매출의 20% 상당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당액이 로열티 손해이다. 원고 이플래닝은 피고들 사이트가 개설된 것을 기점으로, 월간 평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그 매출액의 80% 상당액은 적어도 원고 이플래닝이 입은 손해이다. 변호사, 조사비용도 손해이다.

입력 담당 아르바이트 직원에서 퇴직자가 나왔을 때에도 ID 및 암호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본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자나 담당자는 접속 제한 암호 등도 걸지 않고, 컴퓨터에 ID와 암호를 입력한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적도 있었다. ID와 암호를 메모한 종이를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열쇠를 걸지 않은 서랍에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은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04 판결 요지

모든 직원이 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해도, 직원에게 ID와 암호가 부여되어, 그것 없이는 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져 있던 이상, ID와 암호를 모르는 자에게는 비밀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대표자들이 암호관리의 부실화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결과적으로 원고들 사내에서의 ID와 암호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은 없다.

원고 이플래닝의 로열티 상당 손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 변호사 비용의 청구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조사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합하여 원고 이플래닝에게는 257만 엔 상당, 원고 머티어리얼에게는 57만 엔 상당의 청구를 각 인용한다.

## 05 Key Point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우호적이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극히 영세하여 비밀관리성의 판단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 판결의 기준을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다. 다른 사건들에 비추어보면 조금 더 강력한 비밀관리가 필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청구는 영업비밀관련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종료된 뒤에 할 터인데, 여기서는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인데 1회에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송에서도 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